

경운대학교 벽강교양대학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에 따라 경운대학교 벽강교양대학(이하 “벽강교양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벽강교양대학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09.01., 2020.10.01.>

1. 교양 교육과정 목표, 기획, 운영에 관한 총괄
2.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 및 조정, 학사관리
4.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
5. 교양교육 예산의 운영, 조정 및 지원
6. 건학이념 구현의 기초교양 인증제(KW인성 인증제) 운영
7. 공동 교양교육(교양 연합교육체계)운영 및 학사관리
8. 기타 벽강교양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특성화사업 관련 수행

제3조(조직) 벽강교양대학에 기초교육학부, 교양교육학부, 인덕원의 하부조직을 두며,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01., 2019.09.01., 2020.03.01.>

1. 기초교육학부는 문제해결적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학문적인 기초소양을 담당한다.
2. 교양교육학부는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와 융복합 사고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 대학 특성화 교양교육을 담당한다.
3. 인덕원은 세계와 공감하고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을 담당한다.

4. 삭제 <2020.03.01.>

5. 삭제 <2020.03.01.>

② 벽강교양대학에는 행정실과 스토리라이팅센터를 두며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03.01>

1. 행정실은 벽강교양대학 행정 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 및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2. 스토리라이팅센터는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스토리라이팅센터운영규정」에 정한다.

③ 벽강교양대학 소속의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교양교육연구소운영규정」에 정한다.<신설 2020.03.01.>

제4조(위원회) ① 벽강교양대학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양교육 2WINNER실행위원회규정」에서 정한다.<개정 2017.03.01., 2020.03.01.>

1. 삭제 <2020.03.01.>
2. 삭제 <2020.03.01.>
3. 삭제 <2020.03.01.>
4. 삭제 <2020.03.01.>
5. 삭제 <2020.03.01.>
6. 삭제 <2020.03.01.>
- ② 삭제 <2020.03.01.>
- ③ 삭제 <2020.03.01.>
- ④ 삭제 <2020.03.01.>
- ⑤ 삭제 <2020.03.01.>

제5조(학장) ① 벽강교양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벽강교양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책임교수 등) ① 벽강교양대학에 학부교육 운영을 고려하여 1인 이상의 책임교수를 둔다.

② 책임교수는 각 교육영역별 교과목의 개설, 교양교육과정의 현장적합도 및 평가, 교과목 운영의 질 관리, 공동 교양교육 운영 및 질 관리 및 학생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양교육의 통섭적 문제해결 및 현장 적합도 강화를 위해 타과대학에 복수 소속된 교원이 임명될 수 있다.

④ 소위원장은 교양 교과목 운영과 강사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교과목 신설·폐지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교수는 교양 교과목 신설을 요청하고, 이를 교양교육 2WINNER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0.03.01., 2020.12.01.>

1. 교양과정의 역량별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과목
2. 강의계획서 및 강의 운영이 교양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목

② 신설된 교양교과목은 벽강교양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공지하고, 책임교수는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개정 2020.12.01.>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교수는 교양 교과목 폐지를 요청하고, 이를 교양교육 2WINNER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0.03.01., 2020.12.01.>

1. 4개 학기 이상 개설하지 않는 교과목
2. 연속해서 2개 학기 이상 폐강되는 교과목
3. 벽강교양대학 내 운영부서의 폐지 요청 교과목
4. 교양교과과정 평가에서 폐지 대상 또는 폐지 권고 교과목으로 선정된 경우

④ 폐지된 교양교과목은 각 소위원회 통보하고 책임교수는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⑤ 교양교과목의 신설, 폐지, 변경, 운영 등 교양교육 전반에 관해 벽강교양대학 학장, 책임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양교육 2WINNER실행위원회를 학기 1회이상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한다. <개정 2020.03.01., 2020.12.01.>

제8조(운영 등) ① 교양교과목은 교양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에게 우선배정하며, 교양교과영역별로 전임교원이 1강좌 이상을 반드시 담당하도록 한다.

② 기타교양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양 인증제) ① 본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기초교양 인증제(이하 “KW인성인증제”라고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준은 경운인 영역에서 인덕원의 교과목 중 2개 교과목을 이수(B학점 이상 취득)하고, 봉사활동 50시간 이상 이수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03.01., 2020.03.01.>

제10조 삭제 <2020.03.01.>

제11조(평가 등) ① 교양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해 벽강교양대학 교양교육평가위원회를 두며, 세부 사항은 「교양교육 2WINNER실행위원회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0.10.01.>

② 기타 교양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학사운영세칙) ① 벽강교양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교양교육 2WINNER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01.>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6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9.09.0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20.03.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적용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0.01.>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01.>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